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6)

2022.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기관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
- 규모 : 613.59m²
- 위치도



- 소속기관 : 종합재가센터 12개소, 데이케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 종합재가센터 현황(12개소)

연번	기 관 명(구분)	소 재 지	개소일
1	성동종합재가센터(간호특화형)	성동구 아차산로33 2층	'19. 7.23.
2	은평종합재가센터(기본형)	은평구 진흥로77 3층	'19. 8.28.
3	강서종합재가센터(기본형)	강서구 공항대로325 3층	'19. 9.18.
4	노원종합재가센터(확대형)	노원구 한글비석로432 3층	'19.10.23.
5	마포종합재가센터(통원형)	마포구 마포대로1길44-81 지하1,지상2층	'20. 1.17.
6	송파종합재가센터(기본형)	송파구 위례성대로 18(방이동), 1305호	'20. 9.28.
7	영등포종합재가센터(기본형)	영등포구 선유로 130(양평동), 203호, 204호	'20. 9.28.

8	양천종합재가센터(기본형)	양천구 목동로 177(신정동), 8층	'20. 9.28.
9	도봉종합재가센터(기본형)	도봉구 도봉로136길7(창동), 202호	'20. 11.18.
10	중랑종합재가센터(기본형)	중랑구 중랑역로 62(중화동), 3층	'20. 11.30.
11	강동종합재가센터(기본형)	강동구 양재대로 1410(둔촌동), 6층	'20. 12.14.
12	서대문종합재가센터(기본형)	서대문구 연희로 142(연희동), 2층	'20. 12.14.

· 데이케어센터(2개소)

연번	기 관 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마포 초록숲 데이케어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81 지하1층	'20. 9. 9.
2	강서 든든 데이케어센터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2~3층	'20. 11. 2.

· 국공립어린이집(7개소)

연번	기 관 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노원든든 어린이집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0.3.2.
2	서대문든든 어린이집	서대문구 거북골로100	'20.5.1.
3	중랑든든(새우개하나) 어린이집	중랑구 용마산로 139다길17	'20.7.1.
4	은평든든(응암행복) 어린이집	은평구 은평로220	'20.7.1.
5	영등포든든 어린이집	영등포구 대림로35 가길 9	'20.9.1.
6	강동든든 어린이집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20.9.21.
7	송파든든 어린이집	송파구 위례서이로25	'21.3.1.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사업

다. '23년 소요예산(안) : 21,096,880천원

- 인 건 비 : 13,712,972천원(본부 및 소속기관)
- 사 업 비 : 7,383,908천원(사무운영비, 정책사업비, 연구개발비 등)

라. 출연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 관리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

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²⁾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³⁾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선도적으로 공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 사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음.

- 현재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총 14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19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4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년은 인천광역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7개소, '21년에는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개소가 설립되었으며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로는 크게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로 구성됨. 먼저 직영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종합재가센터가 대표적이며 위탁시설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이나 기관 등을 말함.⁴⁾

4) 박용석·이재훈·윤정향(2021),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시사점」, 민주노동연구원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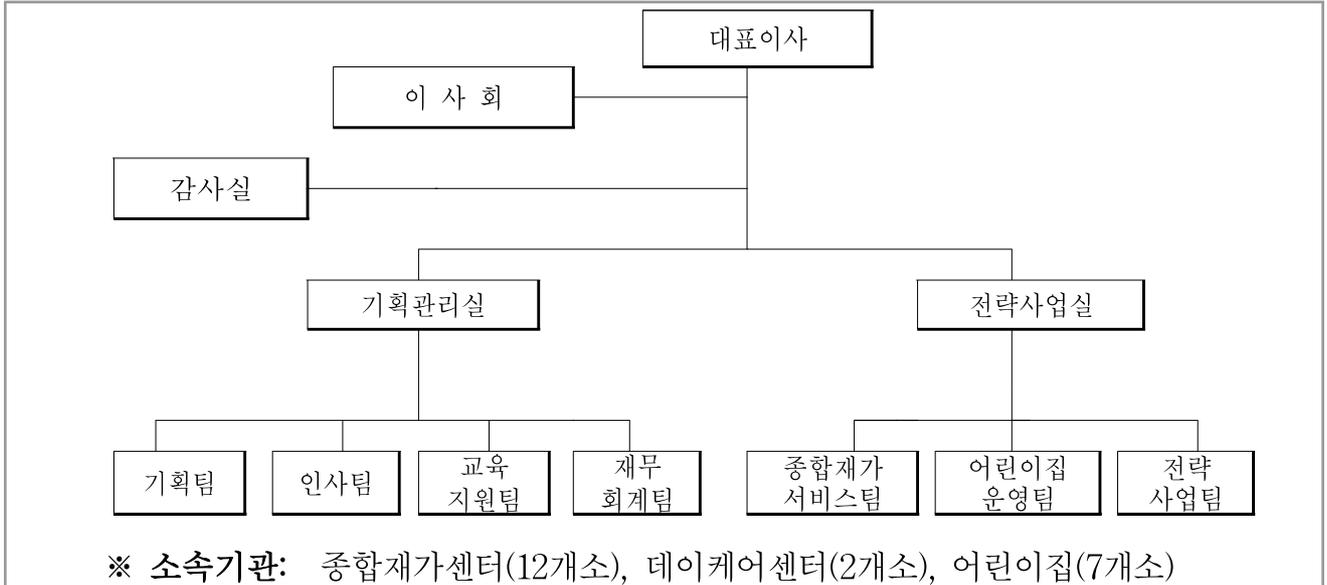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2022년 사회서비스원은 3실 7팀(소속기관 21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감사실이 있으며, 기획관리실은 기획팀, 인사팀, 교육지원팀, 재무회계팀이 있고 전략사업실은 종합재가서비스팀, 어린이집운영팀, 전략사업팀으로 구성됨.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으로는 총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시설은 종합재가센터(12개소), 데이케어센터(2개소), 어린이집(7개소)가 있음.

〈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직도

(' 22. 7. 31. 기준)



- 사회서비스원 정원은 2022년 7월 현재 정원 572명, 현원 463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인력현황

(' 22.7.31.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일반행정						서비스지원				전문서비스		보육			가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3급	4급	5급	6급	나급	다급(요양)	다급(활동)	4급	5급		6급
정원	572	1	-	2	1	10	20	10	1	14	45	17	14	266	55	8	1	95	12
현원	463	1	-	2	-	6	17	15	-	13	35	15	14	203	47	7	1	83	4

다. 예산 및 실적 관련

-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21년 32,769,426천원 대비 '22년 35,433,436천

원으로 8.1%정도 증가했으며 총예산 중 대부분의 예산은 요양보호사 등 직접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어 61%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음.

〈표〉 2022년 예산서

- 예산총괄

(단위: 천원)

구분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정책사업비	예비비
계	35,433,436	4,010,463	2,749,129	24,018,971	4,654,873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과 목	2022년	2021년	증 감
계	35,433,436	32,769,426	2,664,010
1. 영업수입(자체)	6,452,469	5,548,891	903,578
2. 출연금수입	18,879,619	16,018,906	2,860,713
3. 보조금수입	3,298,654	3,030,887	267,767
4. 이자 및 기타수입	309,969	101,400	208,569
5. 잉여금	6,492,725	8,069,342	△1,576,617

○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있어 주요 문제점은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민간 재가센터들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별점이 없는 점, 데이케어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 미달 등이 지적되어 왔음. '23년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력구조 및 서비스 제공방식 등 기관의 취약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임.

라.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성과

-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12개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실적

(' 22.6.30. 기준)

시설명	요양보호사(명)				이용자 실적(건)	주요실적(누적,건)				
	현원	팀장	전일	파트	총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심층 상담	일반 상담
합계	226	12	195	19	26,875	23,634	403	296	90	2,452
성동	27	1	25	1	3,957	3,425	-	296	17	219
은평	23	1	20	2	2,798	2,273	126	-	20	379
강서	23	1	18	4	3,397	2,837	74	-	6	480
노원	27	1	23	3	3,240	2,885	-	-	4	351
마포	16	1	14	1	2,036	1,873	19	-	4	140
영등포	15	1	14	0	1,545	1,461	-	-	2	82
송파	19	1	15	3	1,494	1,366	-	-	4	124
양천	14	1	12	1	1,425	1,126	92	-	7	200
도봉	15	1	13	1	1,491	1,322	61	-	3	105
중랑	16	1	14	1	1,971	1,854	-	-	9	108
강동	15	1	12	2	1,064	975	-	-	8	81
서대문	16	1	15	0	2,457	2,237	31	-	6	183

-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7개소이며,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 등 맞춤형 취약 보육을 우선 운영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있음. 향후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서비스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선도적 공보육 운영모델 구현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표〉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22. 7. 31. 기준 / 단위:명)

어린이집명	개원일	보육원아		보육교직원			취약보육 (운영현황)
		정원	현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	현원		
합계		519	402	104	82	27	
노원든든	'20.3.1.	45	34	12	10	2	야간연장 장애통합
서대문든든	'20.5.1.	71	68	15	12	3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새우개하나	'20.7.1.	68	33	12	9	4	야간연장 장애통합
응암행복	'20.7.1.	98	77	21	20	2	야간연장 장애통합
영등포든든	'20.9.1.	65	50	13	5	5	야간연장 다문화보육
강동든든	'20.9.21.	95	85	19	16	5	야간연장 장애통합
송파든든	'21.3.1.	77	55	12	10	6	야간연장 장애통합

○ 데이케어센터는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22년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정원 대비 현원이 87.5%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향후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이용자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데이케어센터 운영현황

(' 22. 6. 30. 기준 / 단위:명)

시 설 명	개소일시	소재지	이용자현황(명)		주요실적(누적,명)		
			정원	현인원	운영일수	출석	이용상 담
합계			56	49	235	4,235	340
마포구립 초록숲 데이케어센터	'20.9.9.	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81 지하1층	31	29	114*	2,670	297
강서구립 든든 데이케어센터	'20.11.2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23층	25	20	121	1,565	43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으로 강서든든데이케어센터와 운영일수 차이 발생

3 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도입되었음.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기관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규직 월급제 서비스 인력에 따라 점점 비대해지는 인력 대비 미비한 수익창출 구조를 개편하고 공공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출범목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이윤진 입법조사관 (02-2180-8140)